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71
----------	------

2016년 9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 김경자 의원 외 1명(찬성자 15명)

나. 발의일 : 2016년 8월 16일

다. 회부일 : 2016년 8월 16일

라. 상정일 : 제27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9월 8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경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인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를 조정하고, 인권침해 사항의 조사에 있어서 민주적 의사결정·전문성·중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시민인권보호관 이외에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인권센터의 업무 조정(안 제11조)
-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운영(안 제18조~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16. 8.24~ 2015.8.31)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조례안은 인권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비상임보호관을 포함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더 나아가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의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 내용 >

조문	주요 내용	
제7조 (신설)	⑥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u>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u>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신설)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u>서울시인권정책회의</u> (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참석한다. ③ 정책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기타 중요한 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④ 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정책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제 8 조 (신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1 조 (개정)	① (생략) ② <u>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시민인권보호관</u> 운영 및 업무지원 2. <u>인권 관련 실태조사</u> 3. <u>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u> 4. ~ 6. (생략) <u><신설></u> 7.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u> 1. <u>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u> 운영 및 업무지원 2. <u>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u> 3. <u>인권 관련 실태조사</u> 4. ~ 6. (현행과 같음) 7. <u>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u> 8.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 (신설)	① <u>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u> 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u>	

	<p>② <u>위원회는</u>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5.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③ <u>위원회는</u>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u>제18조 시민 인권보호관에</u>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② <u>인권위원회는</u>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u></p> <p>③ <u>인권위원회는</u>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u>제18조에 따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u>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 15 조 (개정)</p>	<p>제15조(구성) ① <u>위원회는</u>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u>연임 할</u> 수 있다.</p> <p>④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15조(구성) ① <u>인권위원회는</u>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u>1회에 한하여 연임할</u>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제 17 조 (신설)</p>		<p><u><신설></u></p> <p>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u>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u></p>
<p>제 18 조 (개정)</p>	<p>제18조(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u>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고 한다)</u>을 둔다.</p> <p>② <u>보호관은 5인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u></p> <p>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p> <p>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p>	<p>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u>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 <u>구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u></p>

	<p><u>대학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u></p> <p><u>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u></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③ 상임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하되, 관련분야 실무경력 고려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 활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p> <p>④ 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相当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p>⑤ 구제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⑥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보호관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p> <p>⑦ 구제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밖에 구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제19조 (개정)	<p>①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p>	<p>① 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비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② <u>보호관은</u>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p> <p>③ <u>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p>④ <u>보호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보호관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u></p>
<p>제20조 (개정)</p> <p>① <u>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u> 다만, <u>보호관은</u>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u>인지조사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u>위임사무에</u> 한한다) <p>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p> <p>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p> <p>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호관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로 하지 않을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② <u>구제위원회는</u>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p> <p>③ <u>상임 보호관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보장된다.</u></p> <p>④ <u>비상임 보호관의 해촉 등은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① <u>구제위원회는 인권부서에</u> 상담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u>인권위원회가</u>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u>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u> 다만, <u>상임 보호관이</u>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u>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u>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u>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p>② <u>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조사는 상임 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한다.</u></p> <p>③ <u>구제위원회는</u>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p>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u>③ 보호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지원을 인권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u></p> <p><u>④ 보호관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임·직원, 전문가 등을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u>⑤ 보호관은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건의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right;"><u>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u></p> <p><u>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u></p> <p><u>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다만 상임 보호관이 이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u>④ 구제위원회는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u></p>
제21조 (신설)	<p>시민인권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조사·결정</u>에 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중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제22조 (신설)	<p>① 상임 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③ 상임 보호관은 사건의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차회 구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상임 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p>	

	있다.
제23조 (신설)	<p>제23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결정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구제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구제위원회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제24조 (신설)	<p>제24조(시민인권배심회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하여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② 시민인권배심회의의 의견은 구제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p> <p>③ 시민인권배심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제25조 (신설)	<p>제25조(구제위원회 지원) ① 구제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임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1) 연도별 인권정책 수립(안 제7조제6항)

- 동 조례 제7조제1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5년단위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연도별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안 제7조제6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서울시 인권정책회의(안 제7조의2)

- 안 제7조의2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 관계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서울시 인권위원회장이 참석하는 인권정책회의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 인권정책회의는 서울시 인권정책의 부서간 협조 강화 및 통일성, 효율성있는 인권정책 추진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인권정책회의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소관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부서의 실·국장급 공무원이 인권정책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볼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인권도시 서울'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전체 간부가 참석하여 큰 방향을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안 제8조)

- 안 제8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 인권영향평가란¹⁾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정책, 프로그램, 사업 등이 시행됨에 있어서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권친화적인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말하며,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조례로 시행하는 곳은 광주광역시²⁾와 성북구³⁾가 있음.

1) http://www.seongbuk.go.kr/sb_new/sharewelfare/humanrightscity/evaluation/aboutevaluation/aboutevaluation.jsp

2)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30조(인권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시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조례·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

- 서울시에서 특정 정책의 시행 이전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권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통해 서울시민의 인권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조항에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서울시인권위원회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함)를 통하여 인권영향평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건의하도록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더 나아가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나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24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및 사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
2.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
3.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5.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와 규칙,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성북구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2.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인권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 제24조

제24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및 사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	
2.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	
3.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5.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구제위원회(안 제18조~안 제23조)

① 위원회 구성

○ 안 제18조는 구제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13인 이내 시민인권 보호관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상임보호관(3인 이상 5인 이내)과 비상임보호관(8인 이내)으로 구성하되, 상임 보호관은 임기제 공무원(5급 상당)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구제위원회>

	역 할	구 성	자 격	임기	회의 운영
시민 인권 침해 구제 위원회	다음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 위임사무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 소재 구청장이 조사 의뢰한 사항)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위탁사무에 한함)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 조사는 상임보호관이 협의를 통해 수행 ※ 인권침해 결정 : 구제위원회 과반 의결	13인 이내 시민인권 보호관으로 구성 (상임, 비상임 포함)	* 위원장 : 호선		월 1회 개최 위원장 또는 보호관 3명 이상 의 요구로 임시회 개회
시민 인권 보호관	상임 보호관 3인 이상 5인 이내	임기제 공무원 (5급 상당)	-		
	비상임 보호관 8인 이내		2년 (1회 연임 가능)		

② 위원회의 역할

- 안 제20조는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 위임사무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 소재 구청장이 조사 의뢰한 사항),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위탁사무에 한함),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구제위원회가 조사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③ 위원회의 운영

- 구제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월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보호관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고(안 제18조제6항),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 위원회의 의결(재적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로 하며(안 제23조제1항), 조사는 상임 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음(안 제20조제2항).
- 구제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시장은 위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며(안 제23조제1항, 제2항),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3조제4항).
- 또한, 구제위원회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3조제5항).

④ 위원회의 제척사유

- 안 제21조는 시민인권 보호관의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④ 위원회의 지원

- 안 제24조는 구제위원회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4조).
- 구제위원회는 현행 시민인권 보호관이 단독으로 조사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행정기관 전반에 대한 조직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바, 위원회를 신설하는 조례안이 집행부의 조직편성권을 침해⁴⁾하는 것은

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그 설치의 근거가 마련된 합의제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할하여 관리·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일부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에 속하는 것이지 지방의회에 속한다거나 집행기관이나 지방의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제3의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진다고 해석되는 점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구제위원회의 구성(전체 13인 이내) 중 시장이 위촉하는 비상임 시민 인권보호관의 비중이 8인 이내(61.5%)로, 인권 침해 결정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비중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월 1회 개최되는 회의에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등)에 대해서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시민인권보호관이 아닌 구제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인권조례 개정안 주요 기구 역할표〉

구 분	관련규정	역 할
서울시 인권정책 회의	제7조의2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기타 중요한 인권정책으로 통일적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

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추87 판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외에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을 가지므로, 이처럼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 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 추13 판결 참조).

인권 위원회	제14조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시민 인권 침해구제 위원회	제18조	다음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 (시 위임사무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 소재 구청 장이 조사 의뢰한 사항)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 탁기관 (위탁사무에 한함)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 조사는 상임보호관이 협의를 통해 수행 ※ 인권침해 결정 : 구제위원회 과반 의결
시민 인권 보호관	제11조	1. <u>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u> 운영 및 업무지원 2. <u>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u> 3. <u>인권 관련 실태조사</u> 4.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6.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u>7.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u> <u>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u> <u>8.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u> <u>항</u>

5) 인권센터(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인권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위탁 사무로 ‘구제위원회 운영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p>제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u>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민인권보호관</u> 운영 및 업무지원 2. <u>인권 관련 실태조사</u> 	<p>제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u> <u>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u> 운영 및 업무지원 2. <u>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u>

<p><u>3.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u></p> <p>4.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6.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u>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u>3. 인권 관련 실태조사</u></p> <p>4.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6.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p> <p><u>7.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u></p> <p><u>8.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	---------------------------------------------------------------------------------------------------------------------------------------------------------------------------------------------------------------------------------

- 시민의 인권 보호 사무를 전문성있게 수행하기 위해 인권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일정 부분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 위원회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운영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상임보호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시 공무원 조직에 대한 운영업무는 민간으로 위탁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6) 시민인권배심회의(안 제24조)

- 안 제24조제1항은 “구제위원회로 하여금 인권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하여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 시민인권배심회의는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 돼 조사 중인 인권침해 사건 가운데 시민에게 영향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이 합리적 의견을 도출해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제시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임. 200명의 배심원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7차례 개최되어 3건 을 인권침해사안으로 결정한바 있음.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요〉

○ 배심원단 구성 : 200명 (시민배심원 150명, 전문가배심원 50명)

○ 활동 기간 : 2년 (활동기간 종료 후 본인희망에 따라 연임가능)

〈 시민인권배심원 pool(200인) 〉

◆ 시민 : 150인

- 자격 : 서울시민 중 14세 이상으로 시민의 인권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
- 모집방법 : 25개 자치구별 각 6인 ($25 \times 6 = 150$)

◆ 전문가 : 50인

- 자격 : 인권분야 2년 이상 경력자 등
- 모집방법 : 인권 관련 학계, 전문가, 단체 등 추천

○ 배심 회의

- 배심원 선정 : 16명(배심주재자 1, 시민배심원 10, 전문가배심원 5)
 - 주재자 : 전문가배심원 중 선정, 회의진행 및 평결사항 공표, 평결권한 없음
 - 배심원 : 배심원 pool에서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
- 정원(배심원 15인, 배심주재자 제외) 2/3이상의 참석으로 개회
- 사건 선정: 보호관 조사 사건 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나 파급력 큰 사건으로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선정

○ 동 조항이 시민인권배심회의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시민인권배심회의 의견이 구제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일정 부분 그 실효성을 퇴색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민간위탁 사항에서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1조제2항제1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업무지원”을 삭제함(안 제11조).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71
----------	------------

제안년월일 : 2016년 9월 8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민간위탁 사항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1조제2항제1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업무지원”을 삭제함(안 제11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안 제20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여, 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조사는 상임 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한다.

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 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다만 상임 보호관이 이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구제위원회는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업무지원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4.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6.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업무지원</u> <u>2.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u> <u>3. 인권 관련 실태조사</u> <u>4.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u> <u>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u> <u>6.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u> <u>7.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u> <u>8.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p>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u> <u>2. 인권 관련 실태조사</u> <u>3.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u> <u>4.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u> <u>5.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u> <u>6.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u> <u>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제20조(직무)	제20조(직무)	제20조(직무)
<u><신설></u>	<u>②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조사는 상임</u>	<u>②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조사는 상임</u>

	<p><u>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 한다.</u></p> <p><u>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u></p>	<p><u>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 한다.</u></p> <p><u>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u></p>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호관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p>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p> <p>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p> <p>3.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p>	<p>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p> <p>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p> <p>3.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p>
<신설>	<p><u>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u></p>	<p><u>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u></p>
<신설>	<p><u>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u></p>	<p><u>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u></p>
<신설>	<p><u>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다만</u></p>	<p><u>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다만</u></p>

	<p><u>상임 보호관이 이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④ 구제위원회는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건의할 수 있다.</u></p>	<p><u>상임 보호관이 이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④ 구제위원회는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건의할 수 있다.</u></p>
<p><u>⑤ 보호관은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건의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시에”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를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하고, 제2항 중 “서울시 인권센터에”를 “인권부서에”로 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서울시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참석한다.

③ 정책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기타 중요한 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④ 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정책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5.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6.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위원회”를 “인권위원회”로 하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 중 “위원회”를 “인권위원회”로

하며, “제18조 시민인권보호관”을 “제18조에 따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한다.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

제15조제1항 중 “위원회”를 “인권위원회”로 하고, 제3항 중 “연임할”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로 하며,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위원회”를 “인권위원회”로 하고, 제4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심의”로 하며, 제7항 중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인권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위원회”를 “인권위원회”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2항의”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 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 ·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4장의 제목 “시민인권보호관”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설치”를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제1항 중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고 한다)을”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③ 상임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하되, 관련분야 실무경력 고려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 활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⑤ 구제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보호관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 ⑦ 구제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밖에 구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를 “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비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로 하고, 제2항 중 “보호관”을 “구제위원회”로 하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상임 보호관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④ 비상임 보호관의 해촉 등은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제1항 중 “보호관은 인권센터에”를 “구제위원회는 인권부서에”로 하고, “위원회가”를 “인권위원회가”로 하며, “각 호의 기관의”를 “각 호 기관의”로 하고, “대해 조사할 수 있다.”를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로 하며, “보호관은”을 “상임 보호관이”로 하고, “인지조사 할 수 있다.”를 “직

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호 중 “위임사무에”를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로 한다.

제20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여, 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조사는 상임 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한다.
- 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다만 상임 보호관이 이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구제위원회는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보호관의 제척 등) 시민인권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정에서 제척된다.

1. 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조사수행) ① 상임 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상임 보호관은 사건의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차회 구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상임 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3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결정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구제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

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제위원회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시민인권배심회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하여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민인권배심회의의 의견은 구제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

③ 시민인권배심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구제위원회 지원) ① 구제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임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를 제26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생략)</p> <p>2. "시민"이라 함은 <u>시에</u>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생략)</p> <p>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u>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u>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② 제20조 제1항의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u>서울시 인권센터에</u>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다.</p> <p>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 ⑤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시민"이라 함은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u>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u>「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u>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② 제20조 제1항의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u>인권부서에</u>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다.</p> <p>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 ⑤ (현행과 같음)</p> <p><u>⑥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u></p> <p>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서울시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p> <p>② 정책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참석한다.</p>
<p><신설></p>	
<p><신설></p>	

③ 정책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기타 중요한 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④ 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정책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삭제>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제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업무지원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4.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6.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인권센터)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5.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6.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략)

<신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 시민인권보호관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략)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 ③ (생략)

④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③ 인권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에 따른 시민인권 침해구제위원회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구성)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인권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인권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신설>

①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시민인권보호관

제18조(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고 한다)을 둔다.

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는 인권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인권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인권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신설>

③ 상임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하되, 관련분야 실무경력 고려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 활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④ 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⑤ 구제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보호관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⑦ 구제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밖에 구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비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제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상임 보호관의 신분은 「지방공무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보호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보호관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20조(직무) ① 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보호관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지조사 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다)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호관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④ 비상임 보호관의 해촉 등은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직무)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부서에 상담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상임 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다.)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②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조사는 상임 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한다.

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신설>

<신설>

<신설>

③ 보호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지원을 인권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 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보호관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임·직원, 전문가 등을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⑤ 보호관은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건의할 수 있다.

<신설>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다만 상임 보호관이 이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삭제>

④ 구제위원회는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보호관의 제척 등) 시민인권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정에서 제척된다.

1. 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 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 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제21조(조사 결과 통지 및 회보) ① 보호

관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 및 시정 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시장은 상담 신청인이나 위원회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해야 하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신설>

제22조(조사수행) ① 상임 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상임 보호관은 사건의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차회 구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임 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제23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결정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제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제위원회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24조(시민인권배심회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하여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민인권배심회의의 의견은 구제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
③ 시민인권배심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25조(구제위원회 지원) ① 구제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

상임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